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651
----------	------

2025. 4. 23.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3. 31. 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 4. 2. 회부)

2. 제안이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고, 직제 순서에 맞게 각 호를 체계적으로 개편(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위원회 구성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위촉위원 근거 조항 추가 등 어구 수정(안 제8조, 안 제10조)

다. 용어 약칭 추가(안 제6조제3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2

항제9호, 안 제15조)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안 제2조, 안 제11조의2, 안 제12조, 안 제14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 업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주택실→미래공간기획관)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요건을 정비하고, 운영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임.

가. 운영위원회 관련(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위원에 ‘미래공간기획관’ 추가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u>운영위원회 위원</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미래공간기획관</u>
3. ~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u>서울시의원</u> 2명	7.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
8. <u>출연기관의 대표이사</u>	8. <u>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u>
9. <u>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9. <u>시의</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⑥ (생략)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 -----
----- 모두 회의에 -----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필요한 -----
----- 정할 -----.

○ 서울시는 '17년¹⁾부터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격년 단위로 서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5회 서울비엔날레²⁾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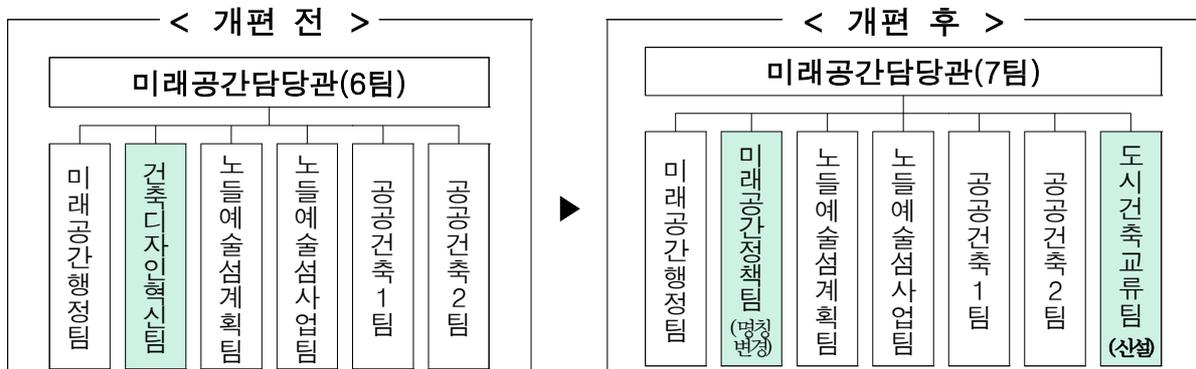
- 서울비엔날레는 '17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21년 7월 그 업무가 주택정책실(현, 주택실)로 이관되었다가, '25. 1. 1일자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³⁾됨.

* 미래공간기획관은 22년 8월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이 통합·재편되었음.

1) 조례 제정일: 2017. 5. 18.(시행 2017. 5. 18.)

2)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5. 9. 4.(목) ~ '25. 10. 31.(금) (58일간)

3) 제1회('17)·제2회('19): 서울디자인재단, 제3회('21)·제4회('23): 주택실, 제5회('25)~: 미래공간기획관
· 미래공간기획관(미래공간담당관) 조직개편 현황('25. 1. 1.자)



- **안 제10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현 소관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려는 사항임.
- 그 밖에 **안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나. 조직위원회 관련(안 제8조)

: 조직위원회 위원 명칭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p> <p>② <u>위원</u>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u>서울 총괄건축가 및 시의원</u>과 그 외 <u>서울의 도시 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로 한다.</p> <p>③ <u>위원장은</u>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p> <p>④ <u>조직위원회</u>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p> <p>⑤ <u>위촉직 위원</u>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u>조직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조직위원회의 위원</u>----- <u>서울 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u> 및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u>시의</u> ----- ----- <u>구성한다.</u></p> <p>③ <u>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u> ----- -----.</p> <p>④ <u>조직위원회 회의</u>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u>위원장이 회의에</u> ----- ----- -- <u>모두 회의에</u> ----- ---- <u>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u></p> <p>⑤ ---- <u>위원의 임기는</u> ----- -----.</p> <p>⑥ <u>조직위원회 회의</u>----- ----- -----.</p>

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필요한 -----
----- 정할 -----.

○ 조직위원회는 서울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의 승인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나, 현재까지 구성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역할 등을 재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이라도 그 역할 중 예산의 승인, 출연기관의 승인 등의 사항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해 보임.

〈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비교 〉

구 분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근거	조례 제7조~제8조	조례 제9조~제10조
구성일	미구성	'17. 5. 18.
역 할	- 사업계획, 예산 등 주요사항 승인	-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실무
	승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승인 · 예산 승인 · 운영 업무 수행 출연기관 승인 ·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 회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수행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사항 · 예산수립과 결산 사항 · 총감독 선정 사항 · 관련 업무의 운영 사항
인 원	10명 내외	17명 이내
위촉직 임기	2년(한차례에 한해 연임)	2년(한차례에 한해 연임)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장 : 시장 ·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3명) 행정2부시장 · 위 원 : 서울총괄건축가 시의원 외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장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시의원 2명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외부전문가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운영(3명 ~ 5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지명

다. 기타 사항(안 제2조, 제6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약칭 규정, 용어의 정비 등 자구를 수정⁴⁾ 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u>격년단</u> 위로 개최한다.	제2조(개최시기) ----- ----- ----- <u>격년 단</u> 위-----.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u>서울시</u>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생략)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 ----- 1. 2. (현행과 같음) 3.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필요한</u> ----- -----.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u>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u> ②·③ (생략)	제12조(출연금 등) ① ----- ----- ----- <u>범위</u> ----- ----- . <u>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u>경우</u>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 <u>경우</u> <u>출연기관의 장에게</u> -----

4) 현행 조례는 '20. 3. 26.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자구 수정 등 용어의 정비가 없었음.

<p>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소속 공무원 ----- ----- -----.</p>
<p>② (생략)</p> <p>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u>서울시</u>로 귀속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 ----- ----- <u>시</u> <u>로</u> -----.</p>

라. 종합의견

- 서울비엔날레는 ‘17년부터 총 5회가 개최되는 동안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행사의 성격과 방향, 준비과정 등 업무의 연속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울시는 장기적 비전과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사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나 조직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조직위원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바, 위원회 간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p>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p>	<p>02-2180-8204</p>
<p>입법조사관 신아현</p>	<p>02-2180-8216</p>

[붙임1] 제1회~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현황 (p.9)

[붙임2]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p.10)

[붙임3]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명단(p.11)

[붙임4] 최근 4년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p.12)

붙임1

제1회~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기간	'17. 9. 2. ~11. 5. (65일간)	'19. 9. 7. ~11. 10. (65일간)	'21. 9. 16. ~10. 31. (46일간)	'23. 9. 1. ~10. 29. (59일간)	'25. 9. 4. ~10. 31. (58일간)
주제	공유도시 (Imminent Commons)	집합도시 (Collective City)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땅의 도시, 땅의 건축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
개최 장소	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세운상가	DDP,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세운상가	DDP,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세운상가	열린송현 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시민청	열린송현 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총감독	(공동) 배형민,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공동)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	도미니크 페로	조병수	토마스 헤더윅
주최 /주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소관부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주택실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소요예산 (출자금)	출연금 5,500백만원	5,814백만원 (출연금 4,589 백만원 포함)	5,346백만원	6,045백만원	7,808백만원
후원규모 (백만원)	204건 (1,672)	95건 (266)	54건 (139)	13건 (41)	미정
관람객 수	45만명	65만명	12만명 [※] 코로나 (온라인포함 76만명)	92만명 (사전오픈 8만명 별도)	-
비고					-

붙임2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

- 기 간: '25. 9. 4.~10. 31. (58일 간)
- 장 소: 열린송현녹지광장^{주행사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 총감독: 토마스 헤더윅 (Thomas Heatherwick, 헤더윅 스튜디오 설립자)
- 주 제: (국문)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 (영문)Radically More Human
 - 더 인간적인 도시와 건축을 만들기 위한 담론과 서울의 미래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

	<p>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 가능한 시각·직관적 로고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눈'을 손그림과 글씨로 결합하고 눈의 깜빡임 요소를 삽입하여 흥미로운 비주얼로 구성 ▶ '눈을 떠 도시와 건축물을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대화하자'는 초대의 의미 전달
---	--

- 주요 프로그램 : 전시, 공식행사, 학술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구 성	주요 내용
전 시	주 제 전	야외 공간에 서울비엔날레 주제를 전달하는 대형 구조물(Hero Installation)에 국내외 작가 10팀 및 10개의 창작커뮤니티가 주제에 대한 전시컨텐츠를 태피스트리(tapestry)*로 엮어 설치·전시
	도 시 전	서울 외 국내외 도시의 주제 관련 우수사례 전시
	서 울 전	서울 미래공간의 혁신적인 비전 공유
	글로벌 스튜디오	국내외 대학의 건축 외관의 심리적, 생리학적 영향 등 다양한 연구 성과 전시
행 사	공 식 행 사	개막식, 팸투어, VIP투어, 폐막식 등
	학술행사-글로벌 대화 (Global Conversation)	전세계 도시·건축 전문가, 주요 도시 행정가 등을 초청하여 개막주간 국제 학술행사 개최
	시민참여프로그램	주제 관련 토크, 강연, 답사,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외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 색실로 짜 넣은 직물. 주로 실내장식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나 이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공간에 특별한 감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함

붙임3**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명단**

□ 구 성: 총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 임 기: 위촉일 ~ '25.11.30.

□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분야
1	당연직	정○훈	기획조정실장	-
2		마○숙	문화본부장	
3		임○수	미래공간기획관 ※ 조례 개정 추진 중('25.5. 공포 예정)	
4		최○석	주택실장	
5		조○준	도시공간본부장	
6		김○규	균형발전본부장	
7	위촉직	강○근	총괄건축가	도시·건축
8		김○기	주택공간위원회	-
9		박 ○	주택공간위원회	-
10		조○수	○○○○ 파트너스 대표	도시·건축
11		배○민	○○○○ 산업디자인과 교수	산업·기술
12		임○영	○○○○○ 서울 대표	건축·문화
13		신○기	○○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	도시·건축
14		최○혁	○○○○ 스튜디오 대표	조경·문화
15		서○경	○○○공방 대표	건축·문화

붙임4

최근 4년간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연도	개최일자	차수	안건수	안건	비고
1	2022	'22.2.21. (소위원회)	소-1	2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기본구상(안) - 프리비엔날레 추진 방향	대면
2		'22.3.22. (소위원회)	소-2	4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상 제정 필요성 - 심사 운영 방안(심사위원, 심사기준, 시상내역 등) - 트로피 디자인 및 네이밍 구상 방안 - 별도 디자인 자문단 구성 필요성	대면
3		'22.4.25.	1	3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전시 기본 구상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 선정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상 제정	대면
4		'22.10.12.	2	4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전시 기본계획(안)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 개최(안) - 2023 서울시건축비엔날레 BI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고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상 상패 디자인 및 제작 현황 등	대면
5	2023	'23.2.7.	3	2	- 제4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세부계획 심의 - 비엔날레 분야별 전문가 선정 추천 명단 및 운영사항	대면
6		'23.3.2. (소위원회)	소-1	1	- 서울시건축비엔날레상 운영규정(심사위원 구성방법, 심사기준, 시상내역 등)	대면
7		'23.4.12. (소위원회)	소-2	3	- 서울시건축비엔날레상 운영규정(심사위원 구성방법, 심사기준, 시상내역 등) - 제4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키비주얼(안) - 제4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전시관 '하늘소' 개장계획	대면
8		'23.8.21.	4	3	- 제4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전시 세부계획 - 제4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운영계획 - 기타 서울시건축비엔날레 관련 사항 논의	대면
9		'23.9.25. (소위원회)	소-3	2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운영성과 중간보고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차기 총감독 선정관련 논의	대면
10		'23.10.30. (소위원회)	소-4	2	-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차기 총감독 선정 관련 논의 - 제5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역할 재조정 검토	대면
11	2024	'24.3.11.	1	2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제5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추진상황 보고	대면
12		'24.6.3.	2	1	- 제5회 2025 서울비엔날레 주제 및 추진방향 보고, 자문	대면
13		'24.8.2.~6.	서면-1	1	- 학술 협력 큐레이터 선임	서면
14		'24.9.~10.	서면-2	1	- 프로젝트 디렉터 선임	서면
15	2025	'25.2.27.	3	5	- 2025년 제5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개요 보고 - 주 행사 장소 선정 경위 및 결과 보고 - 주제전(창작커뮤니티 프로젝트) 추진현황 - 외부전문가 선임 계획 보고 및 승인 - 학술 협력 큐레이터 해촉·변경 보고 및 승인	대면
16		'25.3.26.~31.	서면-3	1	- 2025년 제5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참여전문가 추가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이벤트 프로듀서)	서면